#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9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박정훈・우재준・조경태

정연욱 • 이종욱 • 진종오

고동진 • 배현진 • 정성국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 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投票人名簿"를 "투표인명부, 재외투표인명부,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또는 통합투표인명부"로 한다.

제7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129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 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에

- 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 용하여 하나의 투표인명부(이하 "통합투표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합투표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투표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 봉인하여 보관하여야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투표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 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투표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나용선)을 포함한다]
  -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 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 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

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 진 영내(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5의2. 격리자등
-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14조(투표인명부의작성)의 규정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 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 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확정과 거소투표 신고·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 부의 작성·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0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

- 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 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 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읍 면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 ·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 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사전투표사무종사원을 두어야 한다.
-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종사 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투표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 • 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1조의3(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15조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 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 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 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 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①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5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한다.

-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한다.
-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2(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격리자등이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⑥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7조의3(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57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 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8조(투표의 제한) ① 투표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 ② 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③ 거소투표자는 제59조의3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제57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 2.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 3.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 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 투를 반납한 사람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인명부 또는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통

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투표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 ⑦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9조의3(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제59조의4(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설비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 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 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 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제출할 수 있다.
-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 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 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

- 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 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 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도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 입하여야 한다.
- ③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71조의2(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을 준용한다.
- 제8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

제15장(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장 재외국인투표에 관한 특례

- 제126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에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의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 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

관리관을 둔다.

- 제127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
    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
    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 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

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8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 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 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재외 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제12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 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 를 작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 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 제129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제1 28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130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1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 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 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1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 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2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133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4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제2조(투표인의 정의)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 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者를 말한다.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國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 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 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 다)・邑長・面長(이) "區・市 ・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國 民投票日公告日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 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 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

개 정 아

----- 투표인명부, 재외투표

인명부,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 명부 또는 통합투표인명부---.

제7조(投票權) 18세 -----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 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 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 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12 9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 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 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 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 자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國民 投票日公告日로부터 5日 이내 에 投票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投票人名簿에 登載된 國內居 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者로서 國民投票日 현재에 스스로 投票所에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投票日公告日로 부터 5日 이내에 區・市・邑・ 面의 長에게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은 無料로 한다.

- 1.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開票區 밖에 長期 旅行하는 者
- 2. 法令에 의하여 營內 또는 艦艇에 長期 寄居하는 軍人
- 3. 病院・療養所・收容所・矯導所 또는 船舶등에 長期 寄居하는 者

③區·市·邑·面의 長은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投票人名簿에 이를 표시 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簿 를 投票區別로 따로 작성하여야 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에서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 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한다.

④投票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 名簿에는 投票權者의 姓名・住 所・性別과 生年月日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投票人名 簿에 登載될 수 없다.

⑥投票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區・市・邑・面의 長은 投票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를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 1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 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 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 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 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 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通을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⑧1投票區의 投票權者의 數가 2千人을 넘을 때에는 그 投票人名簿를 2個로 分綴할 수 있다.<신 설>

### <삭 제>

- 제14조의2(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투표인명부(이하 "통합투표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 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합투표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투표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 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 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 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투표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선 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출력한 투표인명부의 보관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第15條(名簿作成의 監督) ①投票 人名簿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監督한다.

제15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 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 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

②區・市・邑・面의 長과 投票 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 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 ・邑・面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區・市・邑・ 面의 長이 事故로 인하여 다른 者가 그 職務를 代理하게 된 때 에도 또한 같다. ·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 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 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 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 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 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 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 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 두조건부 나용선(나용선)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 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 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은 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

③投票人名簿의 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 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 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擧 管理委員會 또는 特別市・廣域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 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 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 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 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 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 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 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 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 송하여야 한다.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

④區・市・邑・面의 長과 投票 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 이 정당한 이유없이 投票人名簿 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不應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違法・부 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 權者에게 그 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유

-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 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 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 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 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⑤第4項의 替任要求가 있는 때에는 任免權者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자

-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 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격리자등
-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 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 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 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 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 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 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 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 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 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14조(투표인명부의작성)의 규정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第16條(名簿閱覽) ①區·市·邑· 面의 長은 投票人名簿作成滿了 日의 다음 날로부터 3日間 場所 를 정하여 投票人名簿를 閱覽하 게 하여야 하며, 投票權者의 편 의를 위하여 閱覽期間중 區·市 에 있어서는 統別, 邑·面에 있 어서는 里別의 投票人名簿謄本 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場 所에 비치하여 供覽하게 하여야

 ②投票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

 名簿를 자유로이 閱覽할 수 있

 다.

한다.

③第1項의 場所와 閱覽時間은 閱覽開始日 3日전에 이를 公告 하여야 한다.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 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 시 · 군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 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 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 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 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 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 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 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 <u>부신청을 하</u>는 때에는 그 사본 작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第21條(名簿寫本의 교부) ①區· 市·邑·面의 長은 國民投票日 公告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확 정된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 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 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申請人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人 名簿寫本 및 不在者申告人名簿 寫本의 交付申請은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確定 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邑・ 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投票人名簿寫本 또는 不在者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 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 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 용) 투표인명부 작성・확정과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 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 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 법」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申告人名簿寫本의 交付申請 및費用納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 설>

- 제50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 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 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 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 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 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 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 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 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 라야 한다.
  -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 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
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
·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
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운영할 수 있다.

-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 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 2. 읍・면・동이 설치・폐지・

   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 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 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종사원을 두어야 한다.
-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종사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통합투표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 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 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 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51조의3(기관·시설 안의 기표 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 다)로서 제15조제1항의 거소투 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 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 및 구치소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 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

   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 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

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 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 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 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 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 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 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 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 비하여야 한다.

8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 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第52條(投票時間) ① (생 략)

②投票를 開始할 때에는 投票區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場所 내외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查하여야 하며, 이에 는 投票參觀人이 관여하여야 한 다.

③郵便投票는 投票日의 오후 6 시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 理委員會에 到着하여야 한다.

<u><신 설></u>

칙으로 정한다.

제52조(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5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 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 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 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 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 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 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 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신 설>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 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 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 전투표소(제5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 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 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

第57條(投票用紙의 受領) ①・②|제57조(投票用紙의 受領) ①・② (생 략)

③郵便投票의 投票用紙는 投票 日전 9日 上午 9時부터 管轄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서 政黨이 추천한 者(이하 "郵便投 票參觀人"이라 한다)의 參觀下 에 投票用紙의 一連番號를 절취 한 후 投票用紙를 封套에 넣어 回送用 外封套에 넣고 다시 發 送用 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2 日 이내에 發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郵便投票參觀人이 그 時刻 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參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郵便投票의 投票用紙의 發送 과 回送은 無料登記郵便으로 한

⑤ • ⑥ (생 략)

다.

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 • 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57조의2(거소투표자에 대한 투 표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 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 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 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 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 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 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 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 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 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

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 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 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 다.

-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경우
- 3. 격리자등이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④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 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 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제57조의3(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신 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에 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한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야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

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57조의 2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 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 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 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 다.
-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 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 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 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 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 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이유있 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第58條(投票의 제한) ①投票人名 | 제58조(투표의 제한) ① 투표인명 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 票할 수 없다. 다만, 第17條第2 項 또는 第18條第2項의 決定書 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投票人名簿에 登載되었더라 도 投票日에 投票權이 없는 者 는 投票할 수 없다.

③不在者申告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은 郵便投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投票할 수 없다.

<u><신 설></u>

자는 투표할 수 있다.

- ② 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③ 거소투표자는 제59조의3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제57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 2.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사람
- 3.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 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 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 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 납한 사람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 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 표인명부 또는 제57조의2제3항 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第59條(記票節次) ① ~ ④ (생략)

⑤第14條第2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郵便投票를하는 者가 소속하는 機關 또는施設의 長은 郵便投票를하는 者가 投票用紙에 記票를하고郵便投票用 封套를 封緘할수 있도록 營內・艦艇・病院・療養所・收容所・矯導所 또는 船舶안에 記票所를 設置하고 이를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記票所는 第51條第5項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郵便投票用記票所의 設置對象과 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투표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 야 한다.

제59조(記票節次) ① ~ ④ (현행 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9조의2(사전투표) ① 선거인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 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 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신 설>

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 유를 기재한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 ①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9조의3(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 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 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 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 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 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 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 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 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 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

<u>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u> <u>함한다.</u>

-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 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 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 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 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 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 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 하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 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 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 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 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

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 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 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 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 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 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
-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

<신 설>

<u><신 설></u> <u><신 설></u>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 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 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 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의2(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제10장(투표)을 준용한다.
제83조의2(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
제15장 재외국인투표에 관한 특례제126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설치 등)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 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 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 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 한 날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 한 날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 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의 설치 ·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 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 리위원회로 본다.
-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 투표관리관을 둔다.

제127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

   이 예정된 사람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 청을 하여야 한다.
-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 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 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국민

투표일 전 40일까지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
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
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
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
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제12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신 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 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 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 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 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제129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

<신 설>

<신 설>

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 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 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 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제128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 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 다. 이 경우 재외투표인명부등 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 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 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 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1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

<신 설>

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 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 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 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 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 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 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제1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 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 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3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 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u><신</u> 설>

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4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 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